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이양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양수 의원)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검토의견]

1. 수산물가공업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 등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물가공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3항 개정).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는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¹⁾.

다만, 수산물가공업 폐업신고에 대해서는 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수산업 가공업 신고확인증’에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신고확인증 반납이 사실상 폐업을

1) 수산물 가공업 신고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알리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음²⁾.

- 이와 달리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폐업신고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관청으로부터 범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자가 고의적으로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폐업신고 관련 유사입법례]

법령명	내 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⑦ (생 략)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2) 시행규칙 별지의 신고확인증 양식 등에 대해서는 [참고자료2] 참조

	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 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⑧ (생략)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营业을 폐업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개정안은 수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폐업신고의 근거를 명시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업신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 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폐업신고의 저조로 인해 업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관리가 어렵게 되는 등 여러 불편이 따를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점을 검토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우선, 개정안은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폐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 폐업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폐업신고의 특성 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수리의 대상에서 폐업 신고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³⁾.

다음으로, 폐업신고를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자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입법례⁴⁾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폐업신고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이며,

다만 부칙 시행일의 경우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에 폐업신고서 양식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현재의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이는 기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운영되고 있던 수산물가공업 신고에 폐업신고 관련 규정을 추가하면서 폐업신고까지 함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된 경우로 보임.

4)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행정관청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의결함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폐업신고의 특성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리의 대상에서 폐업신고를 삭제하고, 영업자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산물가공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부칙).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3항 중 “변경 및 폐업신고”를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업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폐업신고 ----- ----- ----- ----- -----.	③ ----- ----- ----- ----- --변경신고----- -----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에 따	④ (현행과 같음)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u><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영업자의 폐업여부</u> <u>에 대한 정보 제공</u> <u>을 요청할 수 있</u> <u>다. 이 경우 요청</u> <u>을 받은 관할 세무</u> <u>서장은 지체 없이</u> <u>시장·군수·구청장</u> <u>에게 해당 정보를</u> <u>제공하여야 한다.</u> ⑥ (현행과 같음) 부칙 <u>-----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u>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는”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제2항 중 “변경하려면”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업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을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행정 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를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u>자</u>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 ----- ----- ----- ----- ----- <u>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는</u> ----- -----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u>변경하려면</u>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u>변경하거나</u> <u>영업을 폐업하려면</u>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u>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 ----- <u>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u>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7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u>변경사항을 신고하지</u>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u>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47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u>----- ----- -----. ④ (현행과 같음)
--	---